

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한국승강기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

1. 감사 개요

- 감사기간 : 2015. 9. 16.(수) ~ 9. 23.(수), (6일간)
- 감사인원 : 4명 (공인회계사 2명 포함)

2. 감사 결과

| 연번 | 지적건명 | 지적내용 | 처분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| 【법인회계 및 재산관리】 | | |
| 1 | 기부금 처리 부적정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교육 목적 기부금 1,711,000천원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 후 511,000천원만 대학으로 전출하고 나머지 1,200,000천원은 수익용기본재산 취득에 사용 ○ ○○○ 소유의 토지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매입하는 이사회 안건 의결에 참여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 2,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정관 제29조 제2호】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 - 3명 ○ 시정 -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하고 대학으로 전출하지 않은 학교교육목적 기부금 1,200,000천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|
| 2 |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익용기본재산을 외부업체가 무상이용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대학설립·운영규정 제7조 및 제8조,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4조】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 - 3명 ○ 통보 - 입주업체로부터 주차료를 징구하는 등 수익창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|

| 연번 | 지적건명 | 지적내용 | 처분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|--|
| 3 | 법인 재산 손실액 未회수 | <p>○ 토지 고가매입으로 발생한 손실액 450,000천원 중 205,000천원만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고, 나머지 245,000천원은 방치함에 따라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회수불능</p> <p>【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4조, 사립학교법 제27조,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정관 제84조, 민법 제766조 제1항】</p> | <p>【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】</p> <p>○ 경고 - 3명</p> |
| | 【교비회계】 | | |
| 4 | 공사계약 등 부당 | <p>○ 일반경쟁 대상인 기숙사 공사를 특수관계 업체를 포함한 3개업체를 선정하여 지명 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</p> <p>○ 이사회 의결 및 변경계약 체결도 없이 당초 4층으로 설계된 건물을 6층으로 설계변경 실시</p> <p>○ 시공사 귀책으로 중단된 공사에 준공일을 연장하는 변경계약 체결로 지체상금 380,696천원 未부과</p> <p>【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,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35조,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정관 제51조 및 제84조】</p> | <p>【한국승강기대학교】</p> <p>○ 경징계 - 2명</p> <p>○ 경고 - 1명</p> <p>○ 시정(회수) - 지체상금 미징구액 380,696천원을 업체로부터 징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</p> |
| 5 | 교직원 연봉 책정 부적정 | <p>○ 교직원보수규정과 다르게 이사장이 임의로 연봉 책정</p> <p>【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정관 제57조 및 제85조】</p> | <p>【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】</p> <p>○ 경고 - 1명</p> <p>○ 통보 - 연봉을 업적평가 등을 기초로 보수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바람</p> |

| 연번 | 지적건명 | 지적내용 | 처분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6 | 재물조사 부적정 | ○ 재물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54종 30,985천원의 물품 누락 【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49조 제4항】 | 【한국승강기대학교】 ○ 경고 - 2명 |
| 7 |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및 미등록업체와 계약 체결 | ○ 시설공사 법정경비 합계 2,938천원이 미 집행되었으나 감액하지 않고 대금 지급 ○ 전문공사를 실시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 체결 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,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,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,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】 | 【한국승강기대학교】 ○ 경고 - 3명 ○ 시정(회수) - 미정산 된 법정경비 합계 2,938천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|
| 8 | 지식재산권 출원 업무처리 부적정 | ○ 2건의 발명 특허를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없이 직무발명으로 인정하여 산학협력단 권리승계 결정 후 출원비용 2,444천원 지출 【한국승강기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제1항】 | 【한국승강기대학교】 ○ 주의 - 2명 ○ 통보 - 직무발명 여부 및 권리승계를 결정할 때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|